

의안번호	2202340
의 퇴 인	정점식 의원
회 답 일	2024.9.2.
추계번호	24A2432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8조제2항 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)	지역자율계정의 세출 중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사항에 대한 보조를 신설함 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-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78조제2항 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‘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
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
편의증진에 관한 사항’ 및 ‘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
수단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’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추가
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
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
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- 개정안에 따른 ‘농어촌 및 벽지주민,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사업’은
현행법 제78조제2항제1호 ‘가.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 및
도시활력증진지역 등에 대한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’에
근거해서도 추진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
있음
- 현재 국토교통부 등에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자율계정을 통한 농어촌 및 벽지주민,
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세출사업이 다음 [참고]와 같이 시행 중임. 만약 개정안에
따라 동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수준을 확대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
소요 규모는 동일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[참고] 농어촌·벽지지역 등 교통편의 증진사업(지역발전계정) 현황

사업명 (코드)	소관	사업 개요	예산 (억원)	근거법
벽지노선지원 (4538-601)	국토부	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한 국가지원사업(국비:지방비 3:7)	375	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
도시형교통모델 (4546-301)	국토부	대중교통 사각·취약지대 공공형버스·공공 형택시 운영(국비:지방비 5:5)	378	
도시형교통모델 - 제주 (4547-301)	국토부		100	
농촌형교통모델 (4170-301)	농식품부	82개 지자체(군) 대상 농촌형 교통모델 (택시형, 버스형) 사업 추진(국비:지방비 5:5)	249	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
주: 예산은 '24년 확정예산 기준

- 한편 개정안이 이미 수행 중인 농어촌 및 벽지주민,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사업을
지역자율계정을 이용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할 경우, 지역자율
계정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이 또한 추가 재정소요 요인에
해당하지 않음¹⁾

1)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가 개발사업이나 기반
구축사업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(「국가균형발전특별회
계 예산안 편성 지침」, 기획재정부), 현재의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 요인
으로 작용하지 않음

- 다만,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대·재설계가 실시될 경우 지역자율계정의 지출한도 자체가 확대되고, 출연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도 불가피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현 시점에서 농어촌 및 벽지주민,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사업 확대에 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사업시책,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규모를 특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의 부족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